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전 원 표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책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013년 이후부터 지자체별 각 지역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연환경 체험과 다양한

생태관광을 제공함으로써, 희소성 있는 테마관광 콘텐츠의 인지도를 부각시키고 있음. 이에 충청북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생태관광으로 접목시켜 지역주민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은 단지 환경적 보전 가치로의 인식보다는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복지차원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어 주민주도형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환경 중요성의 인식 제고는 상당히 중요함.

충청북도의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생태관광으로 접목시켜 지역주민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및 당위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이나,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에 대한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및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위원장의 책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8.18.~'21. 8.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 요구하여 반영 “수용” 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 등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생태관광으로 접목시켜 지역주민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